#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9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 : 야전비ㆍ허 영ㆍ김병주

윤미향 • 안호영 • 임호선

양이원영・홍성국・박성준

송옥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 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자원의 재이용을 위한 유출지하수 발생신고 의무화 및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재원 확보 및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며, 지하수 관련 업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등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안 제1조의2 신설)

공적 자원으로서의 적절한 관리, 지표수와 지하수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질·수량·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사전예방적 오염관리 원칙 등을 정함.

나. 지하수의 조사 등(안 제5조)

환경부장관은 전국 지하수의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이용실태 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안 제8조제1항, 제9조의4 제1항)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굴 착행위의 신고를 하도록 함.

마. 유출지하수의 관리(안 제9조의2제4항, 제40조제3호의2 신설)

1)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 설치 시 일정 기준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수 유출 발생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 완료 후에 일정 기준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이용계획을 수립·신고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발생 및 이용계획 현황을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 도록 함.

바.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의8 신설)

정부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시설의 개발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원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7조제3 호의2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사용중지,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아. 지하수의 측정 등(안 제17조 등)

지하수관측시설(국가관측망)을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용어를 일원화하고, 국가측정망 및 보조측정망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 변동실 태를 조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함.

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30조의3제1항, 제6항 신설)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이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함.

차. 영업실적 등의 제출(안 제34조의3, 제40조제8호 신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등에게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따른 공공이익의 증진과 그 혜택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지하수를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

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성 및 개발 가능량"을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를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 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미리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대책에도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해당하는 시설물"로, "준공"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토지의 굴착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 2.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수위변동 실태조사"를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을 "(지하수의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로, "수위변동실태"를 "변동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 수위 등의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로, "국가관측망"을 "국가측정망"으로,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로,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관측망"을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관측망"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관측망"을 "각각 "측정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10항) 중 "관측 및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변동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1

1항) 중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을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측정방법"으로, "대통령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 질측정망"을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으로 한다.

제30조의2제4항제1호 중 "조사"를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 사"를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정화 ·관측"을 "제16조의4·제17조에 따른 조사·정화"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7조의3제5호 중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9조의2제2항"으로,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이용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발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34조의3에 따른 영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제5조(유출지하수 감소대책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따른 공공이익의
	증진과 그 혜택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
	<u> 어야 한다.</u>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
	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
	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u>한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
	수 관리에 있어서 수질보전, 수
	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
	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
	된 지하수를 회복・복원할 책임
	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 제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
<u>다.</u>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
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
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
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
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조(지하수의 조사) ①
<u>특성, 개발 가능</u>
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u>.</u>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 · 이용 및 보전 ·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신 설>

<신 설>

 - —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 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 • 이용 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 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 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u>보화)</u> ① (생 략) <u><신 설></u>

③ ~ ⑤ (생 략) <u><신 설></u>

-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 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 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 산, 관리, 분석 및 제공
  -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 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 발・이용할 수 있다. <<u>후단 신</u>설>

- 1. ~ 5. (생략)
- ②·③ (생 략)
-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
  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

③ 지호	<b>-</b> 수센터의	설치	•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시	<b>)</b> 항은	대통령
<u> 령으로</u>	<u> 정한다.</u>		
]8조(지히	수개발 • 여	이용의	신고)

$\bigcirc$	 	 	 	 	 

\_\_\_\_\_

-----. <u>이 경우 미</u> 리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그 발생 현 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 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 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 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 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해당하는 시설물-----지하층 공사를 완료한-----③ 시장・군수・구청장은---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 현황에 관한 사 항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 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 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3. • 4.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u><신 설></u>

<u>·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환</u>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
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토지의 굴
<u>착</u>
<u>4.·5.</u> (현행 제3호 및 제4호
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
·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
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제7호·제8호 --- ------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 え 2.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주 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 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 · 이용시 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기술적 ·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 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 으로 낮아지는 지역으로서 환 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 ·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 를 요청한 경우

9. (생략)

② ~ ④ (생 략)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 ② (생략)

<신 설>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
<u> </u>

- 9.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 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 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

<신 설>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 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 실태<u>를 파악·분석하기</u> 위하여 <u>·분석하기</u>-----<u>국</u>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

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 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 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 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 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 정망"이라 한다)----------<u>변동실</u>태---(2)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

<u> 가측정망-----지하</u>

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 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u> 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 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 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을 설치하 려면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 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 망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이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 정 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 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 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 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 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u>관측망</u> 설치

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
이라 한다)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
<u>하여</u>
③
<u>보조측정망을 설치하</u>
<u>려면 측정망</u>
<u>보조측정망</u>
설치계획
보조측정망
<b>4</b>
<u>측정망</u> 의
<u>측정망</u> 설치
계획을 결정하여
<u>측정망</u>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u>측정망</u> 설치계
획을 고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 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 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_\_\_\_\_

----

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 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 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 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지하수의 <u>관측 및 지하수 수</u> 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① 환경 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이 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u><삭 제></u>

<u>6</u> -	
	<u>변동실태</u>
<u>7</u> -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
<u>망의</u>	수, 측정방법
	환경부렁
<삭	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망의 설치기준・설 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 저 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은 제17조 및 제18 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 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 설치 등) ① ~ ③ (생 략)
  -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 도로 사용하다.
  -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 2. ~ 5. (생략)
  -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6.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 태 조사
  - 7. ~ 10. (생략)
  - ⑤ · ⑥ (생 략)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
용) ①
제17조에 따른 국
<u>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u>

- ②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 1.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 2. ~ 5. (현행과 같음)
  - 설치・운영
  - 7. ~ 10. (현행과 같음)
  - (5)·(6)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 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 설></u>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 5조·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

제	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
	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u>야 한다.</u>
제	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제16조이 <i>A</i> • 제17조에 따르 조

조에 따른 조사·정화·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다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목(竹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제거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u><신 설></u>

_	사 · 정화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	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	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
-	적,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
-	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
-	현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9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
	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신 설>

4. ~ 6. (생략)

-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 략)
  - 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u>저감대책(低</u> <u>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u> 수 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9. (생략)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
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벌칙)
1. ~ 4. (현행과 같음)
5. <u>제9조의2제2항</u>
 이용계획
6. ~ 9.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100-(114-)

항하여 화겨부잔과 및 시 · 도기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 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14. (생 략)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제40조(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삭 제

2. · 3. (생략)

<신 설>

3의2. (생략) 4. ~ 7. (생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2. ~ 14.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 하수 발생 현황의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3의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8. 제34조의3에 따른 영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자